

조기 개입에 대한 가족의 권리

뉴욕시
조기 개입
프로그램

빠를수록 좋습니다

평가	귀하에게는 자녀가 검사 또는 평가를 받는 것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권	- 귀하에게는 귀하의 자녀를 평가할 사람(평가자)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에게는 귀하의 자녀를 위한 개별화 서비스 계획 회의에서 현재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또는 치료사는 귀하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 EI)을 종료하더라도 자녀의 세 번째 생일까지 언제든지 재이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가	- 귀하에게는 자녀를 TI에 등록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에게는 TI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만 거부하고, 동의한 다른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귀하에게는 귀하의 자녀 및 가족의 정보를 기밀로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TI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 또는 기관에 저희가 정보를 보내기 전 반드시 귀하의 서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회의	귀하에게는 자녀의 평가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	귀하에게는 TI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보험 이용 여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귀하에게는 직접적인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면 통지	귀하는 자녀에 대한 평가, 자격 또는 서비스가 변경되기 전에 반드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기록	- 귀하에게는 자녀에 대한 모든 기록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에게는 이러한 기록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에게는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말씀하십시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대부분의 문의 사항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역 사무소(Regional Office)에 전화하여 차장(Assistant Director)과의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조기 개입 소비자 사안부(Early Intervention Consumer Affairs)에 347-396-682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Bronx: 718-838-6887 • Brooklyn: 718-694-6000 • Manhattan: 212-436-0900
Queens: 718-553-3954 • Staten Island: 718-568-2300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결정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는 항상 결정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적법 절차라고 합니다. 귀하의 적법 절차 권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중재	티 및 중재자(해당 상황과 관련이 없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와 귀하의 우려 사항을 논의하는 방법입니다.
공정 심리	행정법 판사가 우려 사항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시스템 불만 제기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의 경우 다음의 주소로 서신을 보내주십시오.

Director of Consumer Affairs
NYC Early Intervention Program

42-09 28th St
Long Island City, NY 11101

전화: 347-396-6828

팩스: 347-396-8977

공정 심리 또는 시스템 불만 제기의 경우 다음의 주소로 서신을 보내주십시오.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Bureau of Early Intervention

Corning Tower, Empire State Plaza
Albany, NY 12237

전화: 518-473-7016

팩스: 518-486-109z